

 금융위원회	<b>보도자료</b>			 금융감독원
	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	

책 임 자	금융위원회 은행과장 전 요 섭(02-2100-2950)	담 당 자	최 치 연 서기관 (02-2100-2951) 정 현 태 주무관 (02-2100-2955)
	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 이 준 수(02-3145-8020)		김 병 칠 부국장 (02-3145-8022)

## 제 목 :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접수 결과

-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접수 결과, 총 3개 신청인이 신청서 제출  
[상호명(가칭) : 키움뱅크, 토스뱅크, 애니밴드스마트은행]
- 은행법령·인터넷전문은행법령상 요건과 **주주구성·사업계획의 혁신성·포용성·안정성** 등을 심사하고 '19.5월중 예비인가 결과 발표 예정

□ 금융위원회는 3.26(화)~3.27(수) 중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를 진행

○ 총 3개 신청인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

### <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현황 >

상호명(가칭)	주주구성 현황(예비인가 신청서 기준)
키움뱅크 (주주사 28개)	키움증권, 다우기술, 사람인에이치알, 한국정보인증, 하나은행, SK텔레콤, 십일번가, 코리아세븐, 롯데멤버스, 메가존클라우드, 바디프랜드, 프리미어성장전략펀에이2호 PEF, 웰컴저축은행, 하나투어, SK증권, SBI AI&Blockchain Fund, 한국정보통신, 현대비에스앤씨, 아프리카티비, 데모데이, 에프앤가이드, 에스씨아이평가정보, 에이젠글로벌, 피노텍,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, 원투씨엠, 투게더앱스, 바로고
토스뱅크 (주주사 8개)	비바리퍼블리카(토스), 한화투자증권, 굿워터캐피탈, 알토스벤처스, 리빗캐피탈, 한국전자인증, 뉴베리글로벌(베스핀글로벌), 그랩(무신사)
애니밴드 스마트은행 <sup>주)</sup>	주주구성 협의중 (설립 발기인 : 이●●, 최●●, 황●●)

주) 대부분의 신청서류가 미비되어, 기간을 정하여 서류 보완요청 후 보완이 되지않는 경우 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

※ 인가신청서 접수 順, 세부내용은 신청인(키움뱅크·토스뱅크)이 배포하는 보도자료 참조

- 예비인가 신청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될 예정이며, 인가 관련 이해관계자 등으로서 신청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(공고내용 참조)
- 향후 외부평가위원회 평가를 포함한 금융감독원 심사(4~5월)를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예비인가 여부를 의결(5월 잠정)할 예정임
- 예비인가를 받은 자가 인적·물적요건 등을 갖추어 본인가를 신청하고 금융위원회로부터 본인가(신청 후 1개월 이내 심사 원칙)를 받는 경우 영업 개시(본인가 후 6개월 이내) 가능

<붙임>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주요 평가항목 및 배점  
(‘19.1.31일 보도참고자료와 동일)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 출처표시	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<a href="http://www.fsc.go.kr">http://www.fsc.go.kr</a>	<b>금융위원회 대변인</b> pfsc@korea.kr	 넓게 들었습니다 바르게 알려겠습니다
---	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**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**

평가항목	평가내용	배점
<b>①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</b>		
자본금 규모	• 은행의 건전경영에 충분한 자본금을 보유할 예정일 것	40
자금조달방안의 적정성	• 은행업 경영 및 사업계획에 소요되는 자금조달이 현실성이 있을 것 • 추가적인 자본조달방안이 적정할 것	60
<b>②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</b>		
대주주 적격성	• 한도초과보유주주를 비롯한 주주구성계획이 은행법, 인터넷전문은행법상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	-
은행주주로서의 적합성	• 주주 구성이 은행 건전성과 금융산업 효율화에 기여할 것 • 주주 구성이 인터넷전문은행업을 영위함에 있어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을 촉진하는데 유리할 것 • 한도초과보유주주가 장기간의 시야를 가지고 인터넷 전문은행업에 참여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영에 기여할 것	100
<b>③ 사업계획(혁신성)</b>		
사업계획의 혁신성	• 차별화된 금융기법, 새로운 핀테크 기술 도입 등으로 금융과 정보통신기술 융합을 촉진할 것 • 혁신적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금융소비자에게 제시할 것	250
경쟁 촉진	• 기존 은행산업, 금융산업의 경쟁도 제고가 가능할 것	-
금융 발전	• 금융산업의 부가가치 제고, 금융소비자의 편익 제고 등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	70
해외 진출	• 해외진출을 고려한 사업계획과 실천능력을 보유할 것	30
<b>④ 사업계획(포용성)</b>		
사업계획의 포용성	• 서민금융 지원, 중금리대출 공급 등 더 낮은 비용이나 더 좋은 조건으로 포용적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금융소비자 이익 향상에 기여할 것	120
영업내용·방법의 적정성	• 영업내용·방법이 법령, 건전한 금융거래질서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	-
소비자보호체계의 적정성	• 소비자보호체계·조직의 구성계획이 적정할 것	30
<b>⑤ 사업계획(안정성)</b>		
사업계획의 안정성	• 안정적인 경영에 필요한 적정 수익의 지속 창출이 가능할 것 •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주요주주가 자금 등을 투자할 의지가 있을 것 •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할 것	100
리스크 대응방안의 적정성	• 대주주의 사업리스크 차단방안, 의도된 사업모델이 여의치 않을 경우의 대체전략, 기타 사업모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대응방안이 적절할 것	25
수익추정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	• 추정재무제표와 수익전망이 사업계획에 비추어 타당하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	25
경영건전성기준의 준수	• 사업계획에 따라 예상되는 건전성 비율 등이 은행법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	-
리스크관리체계의 적정성	• 리스크관리체계·조직의 구성계획이 적정할 것	25
경영지배구조의 적정성	• 이사회 구성계획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방법에 부합하는지 여부 • 사외이사, 감사위원회 구성 등의 지배구조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 여부	-
내부통제·준법감시체계의 적정성	• 이사회의 경영진의 관계,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방향,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책임 등이 투명하고 적합할 것 • 임직원의 법규준수, 위험관리 및 임직원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적절한 감독 및 내부통제체계가 구축되어 있을 것 • 준법감시인의 업무상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으며, 이사회 등 회의 참석 및 자료 접근권이 보장되어 있을 것	25
기타	• 정관이 관계법규에 부합하고, 감독기관의 감독·검사 수행에 법적 장애가 없는지 여부 등	-
<b>⑥ 인력·영업시설·전산체계·물적설비</b>		
인력 확보계획의 적정성	• 전문인력 확보 및 전문인력의 전문성 유지를 위한 연수제도 마련계획 등이 적정한지 여부 등	20
영업시설 확보계획의 적정성	• 업무공간 및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정보차단벽이 적정한지 여부 등	20
전산체계, 그 밖의 물적 설비 확보계획의 적정성	• 전산자료 보호를 위한 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방안 및 해킹·바이러스 방지 등을 위한 보안시스템이 적정할 것 등	60
※ 외국 금융회사(외국 금융회사의 지주회사 포함) 신청시 은행법령을 준수하는지 여부		
<b>합 계</b>		<b>1,000</b>

\* (-) 표시 항목은 금감원에서 법령 등 준수여부 심사